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0. 26.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10.19. 차재홍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16.10.20.
-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6.10.2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차재홍 의원

### 가. 제안이유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 나. 주요내용

-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2)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3)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4) 사업비 지원(안 제8조)

###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차재홍 의원의 대표발의 외 8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2016년10월19일 제안되었고, 10월20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조례안의 제안은 조례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노인학대 실태파악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였음.

○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음.

UN에서는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1월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였고, 2017년부터는 매년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할 계획임.

한국의 노인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노인학대자의 대부분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5.4%, 딸 10.7%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

의 66.5%에 달했음.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발견이나 개입이 어려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위의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노인상담 교육, 홍보사업 등 필요한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경로사상 퇴색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범국민적 인식제고 확산 및 보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